

「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,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비막이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그 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- 가.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, 위원회 운영방법 등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반영 (안 제3조)
- 나. 법령의 제·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,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, 개축, 용도변경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- 다.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막이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(안 제6조 제2항 제3호)
- 라.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에 「건축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대상 건축물을 포함토록 함 (안 제8조 제1호)

마.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
건축 상 시상근거 규정 신설 (안 제24조)

바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(별표 1)

4. 참고사항

「건축법,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- 건축법 시행령,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
-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
- 아트 폴리스 구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도록 유도하여 도시미관과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상 시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